

## ○○초 조리실무사 산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종류	민사소송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 [1심]	사건유형	손해배상(산)
원고	□□□	피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판결선고일	2022. 7. 19. 원고일부승	비고	
사건개요	<p>○ 원고는 ○○초등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에서 급식 조리 및 관련 업무를 하다가 2018. 4월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그 이후로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인한 요통,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8. 10. 까지 진료를 받음. 원고는 2019. 6.경 조리업무 등을 하던 중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 10. 이 사건 재해 중 '제4-5번간 요추 추간 공협착증,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공간협착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p> <p>○ 피고는 원고가 추간판 탈출증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력이 있음에도, 유해요인을 조사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가 계속하여 허리 등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p>		
주문	<p>1.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0.부터 2022.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p> <p>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p> <p>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p>		
판결요약	<p>○ 피고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원고의 건강을 해치지 않기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p> <p>○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의 정도, 원고가 입은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산재보험급여의 액수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함.</p>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